

수원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2가단5332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수, 김태영, 현문경, 김준홍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수완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래안

담당변호사 정광일, 박애성, 김윤희

변 론 종 결 2024. 8. 27.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22. 1. 17.과 2022. 2. 3. 체결된 매매계약을 52,075,17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075,1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64433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0. 29. “C은 원고에게 15,457,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7.부터 2012.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은 2022. 1.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락을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선박은 C의 소유이다. C은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락을 마쳐주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원리금 합계 총 52,075,171원이며 이는 이 사건 선박의 공동담보가액보다 작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2,075,1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배우자인 D가 이 사건 선박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선박은 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선박은 총톤수 2.81톤의 기선으로 선박법 제1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소형선박이고, 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라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는 정책자금 대출을 받고, 위 대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 E와 이 사건 선박의 명의를 C에게 신탁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명의신탁 재산의 반환의무이행의 한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선박 F의 소유자인데, 2010. 11. 27. 및 2011. 3. 5. F의 소유자를 C으로 각 이전하였다가, 2010. 12. 16. 및 2012. 10. 5. 어선매매에 따른 소유자변경을 원인으로 F의 소유권을 각 회복하였다. 한편 D는 선박 E(어선번호: G, 이하 ‘전 E’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11. 11. 4. 전 E의 소유자를 원고로 이전하였다가, 2012. 10. 5. 어선매매에 따른 소유자변경을 원인으로 C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즉 원고와 D는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각자 소유하는 어선을 상대방에게 매도하는 외관을 창출하였는데, 그 소유 명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D는 C에게 전 E의 명의를 신탁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② H는 2013. 10. 22.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소유자 및 선적항 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C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반면 전 E에 관하여는 2013. 12. 9. 어선매매에 따른 소유자 및 선적항 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C에서 H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에 더하여 D가 2013. 10. 18. I(H의 아들) 명의 계좌로 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D와 H는 위 선박을 상호 교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D는 C이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10. 22. 다음날인 2013. 10. 23.부터 2022. 5.

20.까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어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과정에서 직접 면세유를 구입하는 등 이 사건 선박을 운영 및 유지하였다. 또한 원고는 선박을 상호 매도하는 형식을 통해 취득한 어업자금 대출금 4,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고, D가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적으로 부담하였다. 이에 반하여 C이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하였다거나 그 관리유지에 관여하였다는 정황은 제출된 바 없다.

④ 원고는 D의 사망으로 인해 C이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법정상속지분만큼 상속하였으므로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책임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해행위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C이 이 사건 선박을 상속하기 전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선박 혹은 그 상속지분이 C의 책임재산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철

[별지]

선박의 종류 및 명칭 : 동력선 E

어선번호 : J

선질 : FRP

총톤수 : 2.81톤

기관종류 및 수 : 가솔린기타 기관 250.000 마력 1대

추진기의 종류 및 수 : 나선일체식 추진기 1대

진수연월일 : 2001년 2월 6일

정박항 : 서신면(궁평항)

소유자 : B

